
명지전문대학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2017. 03.



명지전문대학
MYONGJI COLLEGE

I. 개 요

- 목적 :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우리 대학 연구실(실험·실습실)에 대해 사전에 유해인자를 확인 및 제거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준용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 90개 연구실

학 과 명	정기점검(개)	정밀안전진단(개)
기계과	10	1
토목과	10	0
지적과	4	0
전기과	8	1
전자공학과	8	0
컴퓨터공학과	9	0
정보통신공학과	11	0
소프트웨어콘텐츠과	5	0
인터넷응용보안과	3	0
패션텍스타일세라믹과	12	4
보건의료정보과	4	0
합 계	84개	6개

- 수행기간 : 2017.04.20.(목) 까지 (2일간 우리 대학 방문하여 수행)
- 수행내용 : “지침” 따른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등

II. 참여업체 자격

□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 충족 업체

○ 인적 자격 세부요건

가. 본 과업 이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3명 이상의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2일간** 파견해야 한다.

나. “가”항에 따른 기술자란 **기계부문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사 1명 이상, **전기·전자 및 산업부문(소방·방재) 중급기술자**를 포함한 중급기술자 2명 이상을 말한다.

○ 물적 자격 세부요건

-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물적 장비 보유 업체

III. 과업의 수행

□ 일반사항

○ “지침”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실시 내용을 적용하여 우리 대학의 연구실을 점검 및 진단하여야 한다.

○ 우리 대학과 일정을 협의하여 2017.04.20.(목)까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여야 한다.

○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대상은 1일 최대 50개로 제한한다

○ 과업수행 중 점검내용의 기록/관리, 사진촬영 등 과업의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우리 대학의 학생, 교직원 및 시설물의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개인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을 착용해야 한다.

IV. 점검보고서

-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에게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보고서는 “지침” 별표4에 따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하며, 아래의 결과 집계표(EXCEL로 작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	연구실명	건물명,호실	지적분야	지적내용	개선방향	안전등급	비고
(예)기계과	실습준비실	공학관101호	소방	소화기 불량	소화기 교체	2	
...	

- 점검보고서는 컬러인쇄로 하여 총 3부의 책자 및 원본파일(USB)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내용, 점검사진 등을 포함하여 점검보고서를 작성함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우리 대학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연구실 안전등급은 “지침” 제11조(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에 따라 부여한다.

V. 기타

- 우리 대학에 귀속된 산출물 및 정보에 대해 우리 대학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대상자는 과업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